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376
----------	--------

제출년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박은경 의원 등 9명

1. 제안이유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5. 부서검토의견 및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6. 조례안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조례안 예고 : 2023. 12. 27. ~ 2024. 1. 3.

【붙임 1】 제정조례안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황톳길, 자갈길, 모랫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설치장소의 시설관리부서로 한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보행로의 규모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7)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376
----------	-------

제안년월일 : 2024년 1월 22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이 조례 안에서 사용하는 뜻으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 개인으로 한정된 포상 대상을 법인, 단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골자

-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수정(안 제2조제1항)
- 포상 대상을 법인, 단체까지 확대하여 적용(안 제8조)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를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밟으며”로 한다.

안 제8조 중 “사람” 을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u>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u>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u>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밟으며 -----</u> ----. 2.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u>사람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u>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 -- <u>개인이나 법인, 단체</u> ----- -----.